

영등포구청장 및 관제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
의안 번호	17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2. 11. 13.

발 의 자 : 오 현 숙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5조 및 제65조의2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제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」 제2조에 따라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에 대한 본회의의 구정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장 및 관제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석일시 : 2012. 12. 7(금) 10:00

나. 출석장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
다. 출석대상 : 구청장, 부구청장, 행정국장, 재정국장, 복지국장, 도시국장, 건설국장, 보건소장

라. 출석요구이유 :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

마. 요구자 : 오 현 숙 의원 외 4명

3. 참고사항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

나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65조 및 제65조의2

다.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있는관제공무원의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